

2020. 12. 10 개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성명		생년월일	
----	--	------	--

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이용제외 약정)

본인은 은행이 정한 인증서 발급, 재발급, 타행/타기관 등록,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거래 시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지정 또는 추가인증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_____)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고자 본 추가약정을 체결합니다.

제2조 (보안매체의 사용)

본 추가 약정 이후에는 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후 OTP 이외의 다른 보안매체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본 추가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 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3조 (신고의무)

본인은 제1조에 기재한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은행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동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유의사항 및 책임)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위 추가약정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접근매체의 관리, 손실부담 및 면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본 약정을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_____ (인)

법정대리인 _____ (인)

※본 추가 약정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이용 고객은 영사확인 위임장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요 내용 >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